

이와 더불어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규모 자체도 1,200억원 정도 순증 되는데, 이번에 실시되는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수요와 재정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에 사회투자 반영비율 강화

일반회계 기준 지방의 총예산 중 사회개발부문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 이후부터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금년도부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있어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31%에서 36%로 인상한 바 있다. 내년에는 사회개발 관련 항목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⁵⁾ 지방의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더욱 부합하도록 할 예정이다.

4)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중앙정부 차원의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조례로서 취득세·등록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정교부금 배부기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재원규모도 시·군의 보통교부세보다 낮은 수준이다.⁶⁾

따라서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 항목을 증가시키고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총액 기준 10%(3,000억원) 정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5) 「지방비부담심의회」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결정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07.4.5일)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비부담심의회」⁷⁾

5) 검토안(5%씩 인상) : '06년 31% → '07년 36% → '08년 41%

6) 조정교부금 : 자치구 평균 513억원 ('07년 기준)
보통교부세 : 시 평균 1,069억원, 군 평균 924억원